

# 이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1997. 12. 20

내무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7년 11월 22일 이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1997년 11월 24일

다. 상정일자 : 제19회 이천시의회(정기회)

제1차(97. 12. 15) 내무위원회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 2.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자 : 총무국장 한기영)

### 가. 제안이유

통합방위법이 제정되어 1997년 6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 의한 이천시통합방위협의회 및 이천시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나. 주요골자

- 협의회는 통합방위 대비책,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 국가방위 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과 취약지역 대비책, 통제구역 설정 등의 사항을 심의함(안 제2조).
-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하되, 그 의장은 시장이 되며,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시의회 의장, 군부대의 장, 기무부대의 장, 안기부 관계자, 경찰서장, 교육장등으로 정함(안 제3조).

-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시장이 되며, 상황실장은 총무국장이 되고,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지원반, 인력동원지원반, 건설·수송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통신지원반, 보급지원반, 홍보지원반, 재정지원반으로 구성함(안 제4조).

###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안봉환)

본 제정조례안은 적의 침투와 도발이나 그 위협 또는 우발상황에 있어서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하고, 국가총력전 개념에 입각하여 민·관·군·경과 향토예비군 및 민방위대 등을 통합 운영하는등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통합방위법이 1997년 1월 13일 법률 제5,264호 및 같은법 시행령이 1997년 5월 31일 대통령령 제15,383호로 제정 공포됨에 따라 동법 및 시행령에 의한 이천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이천시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므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5. 토론요지 : 생략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만장일치)

### 7. 기타사항 : 없음

## 이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9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천시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및 이천시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의회의 심의사항) ①협의회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통합방위 대비책
2.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

②법 제5조제3항제5호에서 “기타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약지역 대비책
2. 통제구역 설정
3. 기타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3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하되, 그 의장은 시장이 되며,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정한 자로 한다.

1. 이천시의회 의장
2. 육군 제3901부대 1대대장
3. 국군 제307기무부대의 장
4. 국가안전기획부 경기지부 관계자
5. 이천경찰서장
6. 이천교육장
7. 기타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

③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총무담당간사 : 총무과장
2. 민방위담당간사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3. 심리전담당간사 : 문화공보담당관

제4조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시장이 된다.

②상황실은 실장과 20인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총무국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감독한다.

③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동원지원반, 건설·수송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통신지원반, 보급지원반, 홍보지원반, 재정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인 이상 9인 이하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④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유관한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⑤기타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5조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약지역 대비책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

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유지

다. 취약지역안 주민신고망의 조직

라. 관계기관의 협조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

마. 거동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훈련

바. 취약지역에 대한 대민 의료·봉사활동의 실시

2. 개활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애물의 설치

가. 10년생 이상의 임목

나. 모래벙커 또는 연못

다. 이동식 장애물(개활지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간에 한한다)

라. 기타 장애물로 활용이 가능한 체육·문화시설 등의 구조물

3. 호수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대비책의 시행

가. 장애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유물 또는 어폐류 양식장의 설치

나. 자체 수상 순찰활동의 실시

부 족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